1. 標準賃貸保證金 및 標準賃貸料改正

建設交通部告示 第1996－251號 1996. 8. 2

주 요 내 용

1. 적용범위를 다음과 같이 한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1조 제1항 제5호 내지 7호에 해당하는 자가 입주하는 영구임대주택과 임대주택법시행령 제9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

부　　칙

1.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이 고시 시행 당시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는 이 고시에 의한 것으로 본다.
3. 1993년 9월 20일이후 최초로 입주자모집공고한 영구임대주택에 입주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1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법정영세민"이라 한다)가 소득수준의 향상으로 법정영세민에서 제외된 후에도 계속 당해 임대주택에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방법에 따라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를 부과한다.

1) 최초계약시 : 계약당시 법정영세민에게 적용하는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에 차등부과금액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

2) 1차 재계약시 : 계약당시 법정영세민에게 적용하는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에 차등 부과금액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

3) 2차 재계약시부터 : 계약당시 청약저축가입자에게 적용하는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4) "차등부과금액"이라 함은 계약시점에서 청약저축가입자에게 적용하는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에서 계약당시 법정영세민에게 적용하는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를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주택회보